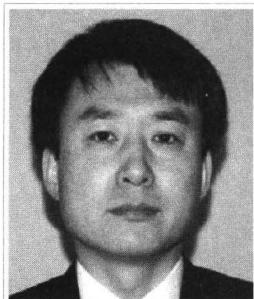


## WHO의 “노동자 보건에 관한 행동계획” 발표에 즈음하여 생각해보는 우리의 현실



WHO(세계보건기구)유럽지부  
직업보건 담당  
김록호

세계보건기구(WHO)의 회원국들은 2007년 5월 제네바 세계보건총회에서 “노동자보건에 관한 전지구적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이 행동계획은 WHO가 1996년 선언했던 “모든 사람의 직업건강을 위한 전지구적 전략”의 연장선에서 2008년부터 10년간 WHO와 회원국가들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행할 행동들을 제시하고 있다.

결의사항에는 회원국 정부가 노동자, 고용주, 그리고 그 단체들과 협력하여 노동자건강에 관한 행동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을 수립할 것, 노동인구의 특수한 건강요구를 취급할 핵심 기관과 인적자원을 강화할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WHO 행동계획의 진행 상황을 2012년 세계보건총회에 보고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대표로는 보건복지부가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하였지만 국내에서는 산업보건사업 책임부처인 노동부가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함께 WHO 행동계획의 실행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좁은 의미의 직업보건에서 넓은 의미의 노동자보건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데 이 분야의 세계적 흐름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라면 반드시 숙독을 권하고 싶다.<sup>1)</sup>

WHO의 행동계획은 직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협약과 유럽연합(EU) 직업건강 안전전략과 일맥상통한다. 지난 1년 사이에 세 국제기구가 한 목

1) 영어로 된 결의문을 [http://www.who.int/gb/ebwha/pdf\\_files/WHA60/A60\\_20-en.pdf](http://www.who.int/gb/ebwha/pdf_files/WHA60/A60_20-en.pdf)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소리로 직업보건관련 정책을 강조하는 준국제법적 문서들을 발표했는데, 이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세계화 시대에 인구의 절반이자 경제생산의 주역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급격히 대두하고 있다는 징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내년 6월 말 서울에서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가 열린다. 스포츠로 치면 월드컵 대회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국제대회에 전 세계의 전문가와 고위급 관리자들이 대거 참석할 것이다. 유럽의 국제회의에서도 종종 “그럼 다음에 서울에서 만나자”는 인사를 주고 받게 될 만큼, 이 대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상당히 높다. 따라서 이 대회는 국민총생산량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이 15세 소년이 온도계 제조공장에서 수은중독으로 사망하고, 수 백명의 노동자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죽거나 병드는 등 후진국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노동자 보호의 선진국으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노동자 보건 현실은 국제사회에 자랑할 만한가?

한 예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특수건강진단제도의 현실을 보자. 일제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감시하고 탄압했던 군사독재정부 아래에서 시작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에 전국적으로 매년 60여 만 명의 법정 유해작업 노동자가 150~200억 원의 비용(사용자 부담)을 들여 검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직업병 조기진단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물론이고 노동자와 전문가도 부정적이다. 그 동안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날 때마다 임기응변식의 개선이 시도되고는 했지만 한번도 노사정이 함께 WHO와 ILO가 제시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한국형 직업보건제도에 관해 청사진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러다가 한 노동자가 특수 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업병으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고 정부, 특검기관,

사용자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희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내놓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후진국의 모습이다.

이런 낙후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노동단체, 사용자단체가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sup>2)</sup>에서 이제까지 타성적으로 실시되어 온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국제적 기준과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제도적 대안을 찬찬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군사독재시대에 졸속으로 만들어져 형식적으로만 시행되어온 “산업안전보건”의 시대를 마감하고 ILO 권고에 따른 노사정의 대화를 토대로 “직업안전보건” 내지 “노동안전보건”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 이자 사회문화적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WHO의 “노동자 건강을 위한 행동계획” 등 21세기의 세계적 흐름에 당당하게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

---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lmg.go.kr>